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 제한 예외 근거 마련 등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9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 제한 예 외 근거 마련 등	3
2. 어린이통학버스 용도의 기존 경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기준 변경 ...	9
※ 참고자료	14
1. 어린이통학차량 대체시장 생산 가능물량(2024년 기준)	14
2.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16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2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부터 기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기존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 장의 인사이동이나 여건 변화로 소유주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 시행 전부터 기존에 운행해온 경유자동차는 계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사용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작사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 제한 예외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의 예외사유로 ‘경유자동차 이외의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②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대체자동차의 우선출고뿐만 아니라 제작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및 제28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그 밖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u>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u>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 ----- ----- ----- ----- ----- ----- ----- <u>출고 및 제작하도록</u> ----- -----. ----- ----- -----.

첫째, 현행법¹⁾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 1) 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234호, 2020.4.7. 일부개정, 2021. 4.8. 시행)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 제도화됨에 따라 이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함께 마련하였음.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²⁾ 유형]

플랫폼 사업 유형	Type 1 (플랫폼 운송사업)	렌트 또는 직접 보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신규형태
	Type 2 (플랫폼 가맹사업)	기존 법인/개인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	既 Waygo 등 가맹사업 진화형
	Type 3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여객 운송사업자를 연결	既 카카오택시 등 택시중개 앱

자료: 환경부

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³⁾ 및 화물을 집화·분류·

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3) □ 어린이통학차량 : 약 8.6만대('24.8.31. 기준)

배송하는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⁴⁾에 대해서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체 차량의 출고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와 같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유에는 예외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⁵⁾이 있었음.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현황('24.8)]

(단위: 대, %)

구분	계	경유	LPG	전기·수소	CNG	휘발유 (하이브리드 포함)
전체	86,416	65,908	19,690	495	211	112
비율(%)	100.00	76.3	22.8	0.6	0.2	0.1
소형(15인승 이하)	59,079	39,199	19,690	102	-	88
비율(%)	68.4	66.4	33.3	0.2	-	0.1
중형(16~35인승)	18,130	17,766	-	321	19	24
비율(%)	21.0	98.0	-	1.8	0.1	0.1
대형(36인승 이상)	9,207	8,943	-	72	192	-
비율(%)	10.6	97.1	-	0.8	2.1	-

자료: 경찰청

- 유종별로 (경유) 76.3% > (LPG) 22.8% > (전기·수소) 0.6% 順
- 규모별로 (소형) 68.4% > (중형) 21.0% > (대형) 10.6% 順

4) □ 택배 전용 화물차 : 약 7.4만대('24.10.5. 기준)

- 유종별로는 (경유) 79.1% > (전기) 13.1% > (LPG) 7.8% 順

5) (교육부)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확대 및 제도 유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24.10.)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중·대형 승합차의 경우 소형 승합차에 비하여 대체차량(전기·수소) 수급 지연, 기존 경유자동차 대비 높은 구매가와 긴 출고기간(6~10개월)으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 필요('24.9)

[택배용 화물차 현황('24.10.)]

(단위 : 대)

구분	계	경유	전기	LPG
전체	74,850(100%)	59,185(79.1%)	9,789(13.1%)	5,875(7.8%)
수도권	40,289(100%)	32,742(81.3%)	4,119(10.2%)	3,428(8.5%)
비수도권	34,561(100%)	26,443(76.5%)	5,670(16.4%)	2,447(7.1%)

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배” 번호판 화물차 등록 현황을 추출

이에 개정안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로서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는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업계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8조의2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법 제28조제3호)에 한정하여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정 용도 자동차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28조의3⁶⁾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동일 목적으로

6) 법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2제3호에서는 경유자동차 외의 대체자동차가 없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생산물량의 증대 및 신규 차종의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에 “제작”을 포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⁷⁾⁸⁾).

7) 국내 자동차제작자 등 실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 동안 별도의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환경부).

8) (참고자료 1) 어린이통학차량 대체시장 생산 물량(규모별, 2024년 기준)

2. 어린이통학버스 용도의 기존 경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기준 변경

개정안은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 시행일 이전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어온 경유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의 기준을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 ----- ----- ----- ----- ----- -----. 1. ----- -----

현행	개정안
려는 경우.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략) ② (생략)	-----.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제정된(2019.4.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9)는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②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2019.4.2.) 후 4년이 경과한 날(2023.4.3.)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예정된 시행일(2023.4.3.)을 기준으로 할 때 기술개발 소요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LPG 등 대체차량 출시 시기 지연이 예상됨에 따

9)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법률 제1930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2023.3.28. 일부개정, 2023.3.28. 시행)¹⁰⁾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재조정하고,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운행하여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¹¹⁾에 따

10)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

라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식¹²⁾은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이 직접 소유하면서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하는 경우, ②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과 차량 운전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③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어린이통학차량의 소유자와 운송계약을 체결(이하 ‘전세버스 운송계약’이라 함)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이 중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제외하고는 시설 양도 및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면, 어린이통학버스용 차량 소유자 또한 변경¹³⁾되어 기존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음.

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13) ① 어린이교육시설의 장(甲)이 시설과 어린이통학버스용 차량을 양도하여 소유자가 어린이교육시설의 장(乙)로 변경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甲)	→	차량 소유주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乙)
직접 운행			직접 운행	

② 시설의 장(甲)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어 기존의 공동명의를 시설의 장(乙)과 차주(A)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 명의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甲) 차주 A	→	공동 명의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乙) 차주 A
차주 A 운행			차주 A 운행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는 달리 어린이 교육시설의 특성상 차량 소유주의 명의를 행정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잦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참고로, 현재 경찰청¹⁴⁾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¹⁵⁾와 DB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 자동차의 사용 제한 적용 기준을 차량으로 변경하더라도 별다른 집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

14) **(참고자료2)**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5) □ 신고항목: ① 신고자(어린이교육시설의 장), ② 소유자, ③ 자동차, ④ 보험가입여부, ⑤ 차의 운행(운행구간, 운행횟수)

□ 신고절차: ① 제작사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구매 (또는 구조변경) → ② 교육시설 명의 또는 공동명의(차주)로 관할 지자체 등록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 → ③ 교육시설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신고 → ④ 관할 경찰서는 내용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 참고자료

1. 어린이통학차량 대체시장 생산가능 물량(2024년 기준)

○ 소형 : LPG 8,745대, 하이브리드 4,020대, 전기 400대 생산 가능

제작·수입사	차 종	인승	유종	판매금액 (만원)	자부담금 (만원)	생산물량 (대)	평균 출고기간	출시연월
현대 (韓)	스타리아 투어러	9	LPG	3,208	2,708	545	7개월	'24.3
		11		3,208	2,708	1,650	7개월	'24.3
	스타리아하이브리드	9	하이브리드	3,653	3,653	945	3개월	'24.3
		11		3,653	3,653	2,625	3개월	'24.4
	스타리아어린이*	11	LPG	3,572~ 4,067	3,072~ 3,567	2,900	2~3개월	'21.10
		15		3,835~ 4,330	3,335~ 3,830	2,900	2~3개월	'21.10
아이버 스 (韓)	스타리아어린이*	11	LPG	3,697	3,197	250	2~3개월	'21.9
		15		3,690	3,190	500	2~3개월	'21.9
	스타리아하이브리드*	11	하이브리드	4,211	4,211	150	2~3개월	'24.4
		15		4,474	4,474	300	2~3개월	
테라팩 토리 (中)	테라벤티즈*	11	전기	7,425	6,191	100	2개월	'23.2
	테라벤티즈11*	14		7,700	6,459	100	2개월	'23.2
	테라벤	11		6,985	5,759	200	2개월	'23.2

○ 중형 : 전기차 중형 770대 생산 가능

제작·수입사	차 종	인승	유종	판매금액 (만원)	자부담금 (만원)**	생산물량 (대)	평균 출고기간	출시연월
현대	카운티	23	전기	19,984	13,720	65	10개월	'23.1
		20		20,994	14,594	15	10개월	'23.1
	카운티*	30		20,050	13,786	10	10개월	'23.1
		33		20,070	13,786	140	10개월	'23.1
우진산전	아폴로1200	29		46,200	36,200	100	6개월	'24.3
이비온	E6(JL618S)*	18		12,480	10,677	200	즉시	'21.12
아이버스	카운티어린이*	22		22,430	16,166	30	10개월	'23.2
	GREENWAY 720	30		22,000	15,300	200	6개월	'21.5
한차	GREENWAY 720p	23		25,000	-	-	6개월	'24.12 예정
중원 자동차	EV J1	33		18,700	16,306	10	4개월	'23.6

○ 대형 : 전기차 대형 1,000대 생산 가능

제작·수입사	차 종	인승	유종	판매금액 (만원)	자부담금 (만원)**	생산물량 (대)	평균 출고기간	출시연월
우진산전	아폴로1200	42	전기	46,200	34,800	290	6개월	'24.3
아이버스	에디슨어린이*	39		45,603	36,053	100	4~5개월	'22.12
	아이버스아폴로*	42		미정	-	10	7개월	'24.12 예정
피라인	하이퍼스 HP	42		38,000	-	250	6개월	'24.3
	하이퍼스 PRIME	45		48,000	-	250	6개월	'24.4
한차	GREENWAY 1100A	46		39,500	29,810	100	6개월	'22.6

*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제작·출시된 차량(구조변경 불필요)

** 전기차: 판매가 - (국비*1.2^{어린이통학 20%추가}+지방비^{서울시기준}) / LPG차: 판매가 - 500만^{신차보조금}

※ 출처 : '24년 승합차(9인이상) 제작·수입사 어린이통학차량 생산·출시 계획 수요조사 결과('24.3.8 기준), 환경부

2.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2. 31.>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보험 (공제) 가입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차의 운행	운행 구간				
	운행 횟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2. 학교(학원) 등기(등록)·인가·신고서 사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